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경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50

발의연월일: 2021. 6. 11.

발 의 자:유경준·박성중·황보승회

박형수 · 김 웅 · 권명호

이태규・송석준・정동만

김은혜 · 김용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어민·서민이 조합법인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및 농업인의 예금·적금증서 · 통장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, 농협중앙회·수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 21년말 일몰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기악화 및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지세 면제는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농어민·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억하고 있으며,

농협중앙회·수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·수협 사업구조개편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함에 따라 농어민 권익증 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바,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.

이에 2021년말로 도래하는 농어민·서민의 융자·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제도와 농협중앙회·수협중앙회 등의 전산용역 부가가치 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농어민·서민 지원을 위해 조합법인의 조합원·회원의 융자서류·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(안 제116조제2항).
- 나.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(안 제121조의23제10항).
- 다. 수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(안 제121조의25제8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6조제2항제3호 중 "제11호 및 제19호는 2021년 12월 31일"을 "제1 1호는 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21조의25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안 제116조(인지세의 면제) ① (생 제116조(인지세의 면제) ① (현행 략) 과 같음)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3. 제5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, 제11호 및 제19호는 2021년 1 제11호는 2024년 12월 31일-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 문서에만 적용 4. • 5. (생략) 4. • 5. (현행과 같음) 제121조의23(농업협동조합중앙회 | 제121조의23(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) 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) ① ~ ⑨ (생 략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 2024년 12월 31일-----치세를 면제한다. ______ 1. • 2. (생략) 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① (생략) ① (현행과 같음) 제121조의25(수산업협동조합중앙 | 제121조의25(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 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 례) ① ~ ⑦ (생 략) 례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8
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2021	<u>2024</u>
<u>년 12월 31일</u> 까지 공급하는 것	<u>년 12월 31일</u>
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	
제한다.	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